

상속결격제도에 관한 고찰

박종렬[○], 전명길^{*}

[○]*광주여자대학교 경찰법학과

e-mail: park3822@kwu.ac.kr[○], jeonmg@kwu.ac.kr^{*}

A Study on the Disqualification of Heir

Jong-Ryeol Park[○], Myung-Gil Jeon^{*}

[○]*Department of Police & Law, Kwangju Women's University

● 요약 ●

상속결격이란 피상속인이 상속할 순위에 있지만 그 자가 피상속인 등의 생명침해 혹은 피상속인의 유언행위에 대해 고의로 위법한 침해한 경우 상속인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이다. 상속인에게 법정결격사유가 발생하면 그 상속인은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이렇게 상속인자격을 상실한 자를 상속결격자라고 한다. 즉 윤리적·경제적 관계에 있는 피상속인과의 정당한 상속관계를 파괴하는 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일종의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는 상식 속에 그 근거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현행 민법 제 1004조에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특히 유언장을 위조한 상속인은 제1004조 5호 규정에 의거 상속결격사유가 발생되는데, 상속결격은 일신전속권인 효과로 인하여 다른 상속인들에게 그 효과가 미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대습상속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의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상속결격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키워드: 상속결격(Ineligibility for inheritance), 상속(Inheritance), 대습상속(Succession), 유언장(Will), 피상속인(Predecessor)

I. 서론

우리나라 민법 제1004조 규정에 의거 상속인에게 법률이 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재판상의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당연히 법률상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 받는 자격을 상실하게 하는 것을 상속결격이라고 한다[1]. 즉 피상속인의 유산을 그 사람과 일정한 신분관계에 있는 상속인들에게 상속을 하는 것은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의 긴밀한 윤리적·경제적 유대관계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합관계를 파괴한 사람, 비행을 저지른 사람에게 일종의 제재를 가하여 상속권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제도의 존재이유이다.

한편 본 논문에서는 상속결격제도의 문제점으로서 상속인과 전혀 관계없는 자에 대한 비행행위를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한 부분과 상속결격자에 대해 결격의 용서를 하거나 상속결격의 효과를 취소 또는 면제시켜 상속자격을 회복시키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 검토를 통하여 그동안 상속결격제도와 관련한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상속결격의 사유

1. 피상속인에 대한 비행행위

1.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는 자

고의의 살인인 경우에 한하며 살인죄라면 기수이건 미수이건 묻지 않는다. 살인의 예비 또는 음모와 자살의 교사·방조도 이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선순위자나 동순위자가 태아인 경우에는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가 규정하는 낙태죄도 같다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은 고의의 범죄이어야 하므로, 과실상해치사는 이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가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사람을 살해한 경우 자기가 상속에 있어서 유리하게 되리라는 의사는 필요하지 않는다[2].

1.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제1호와 달리 여기서는 상속의 선순위자 또는 동순위자의 상해치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상해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고, 과실치사는 상속결격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단순히 피상속인에게 부리는 비행행위는 상속인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3].

2. 피상속인의 유언에 대한 방해나 부정행위

2.1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여기서의 유언은 유효한 유언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고의는 사기와 강박사실에 대한 고의와 특정 유언행위를 방해하여 자기가 유리하게 상속을 받으려는 고의가 존재를 해야 한다. 이러한 방해를 통해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속재산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유증을 포함하는 유언은 물론, 상속인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친생부인 및 인지를 포함하는 유언과 재단법인의 설립의 유언도 상속에 관한 유언이라고 볼 수 있다[4].

방해행위는 어떤 것이든 무방하고,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유언 증서를 파기할 것을 위탁한 경우에 상속인이 이를 실행하지 않고, 몰래 보관하는 경우도 철회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2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거나 한 자

동조 제3호와 반대로 피상속인에게 사기나 강박으로 진의에 기하지 않은 유언을 하게 하는 행위역시 상속결격사유가 된다. 피상속인은 이를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으며, 사기나 강박의 행위자는 상속결격자가 된다. 따라서 강제된 유언의 경우 유언의 취소내지 철회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으나 상속결격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2.3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상속인이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후에 피상속인이 그 유언을 철회한 경우에는 동조 제5호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즉 상속에 대하여 영향을 줄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위조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유언서를 작성하는 것이고, 변조란 피상속인이 작성한 유언서 내용을 상속인이 마음대로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5].

3. 소 결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는 경우 살해자는 상속권을 박탈하는 것은 형사적 제재 외에 민사적 제재를 가한다는 것도 병행한다고 볼 수 있으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해행위로 인하여 피상속인과 상속인간의 윤리적 결합관계가 파괴되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사람을 살해하였는데 살해의 결과 예측하지 않았던 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

III. 상속결격의 효과

1. 상속인의 자격상실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상속인은 당연히 상속할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상속개시 전에 결격사유가 생기면 그 상속인은 후일에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상속을 할 수 없다[6]. 상속개시 후에 결격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일단 유효하게 개시한 상속도 그 개시 시에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따라서 결격자가 상속재산을 선의·무과실의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그 양도행위는 처음부터 당연 무효이며, 선의취득의 보호를 받지 않는 한 제3자는 아무 권리도 취득할 수 없다.

2. 일신전속성

상속결격의 효과는 특정의 피상속인에 대한 관계에만 영향이 있고, 다른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자격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7]. 한편 고의로 직계존속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는 자 또는 직계존속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절대적 결격자로서 예외이다. 그리고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대습자의 피대습자에 대한 결격이 피상속인에게까지 미친다.

3. 수증결격

상속결격에 해당하는 비행이 있는 후에 피상속인이 유증을 한 경우에도 유증을 받을 수 없는데 대해서는 상속결격자는 수증결격이 된다는 이유로 여전히 유증을 받을 수 없다는 견해와 상속결격자는 유증의 수증결격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결격자에게 유증을 주는 것을 막는 규정은 없다는 이유로 상속결격에 해당하는 비행이 있는 후에 유증을 주는 것은 유효하다는 견해가 대립한다[8].

4. 용서의 가능성

상속결격자에 대해 결격의 용서를 하거나 상속결격의 효과를 취소 또는 면제시켜 상속자격을 회복시키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 견해가 대립된다[9]. 이에 대해 상속결격제도는 상속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을 이유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용서를 하여 상속적 협동관계의 회복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일반적으로 용서를 인정하는 견해, 상속결격이 있는 후 결격자에게 유증을 주는 것을 인정하여 이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용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견해, 용서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그렇더라도 생전증여를 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용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실제로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견해 등이 있다.

5. 소 결

우리민법 제1004조의 상속결격사유는 피상속인의 생명침해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에 대한 비행의 경우에는 그 비행행위의 범위에 폭행 또는 상해와 같은 피상속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행위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IV. 상속결격의 효과

1. 용서의 의의

상속결격의 용서는 우리민법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인정여부가 문제가 된다[10]. 상속결격이 어느 정도 공익적 이유 때문에 상속인에게 과하는 제재제도이면서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하고 있고, 또한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가 보장

되고 있는 현행법하에서는 상속결격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의사가 완전히 고려될 수 없는 것보다는 오히려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다면 용서가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2. 용서권자

선순위 및 동순위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용서하는 경우도 예상된다. 용서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의 의사 및 감정이 중심이 된다고 해석하여야 하며 피상속인이 타인의 의사 및 감정에 의해 구속되는 것은 적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순위 및 동순위의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또는 살해하려고 하여 처형된 경우에 관하여 피상속인이 용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제도의 공익적 성질 즉 상속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제재를 강요하여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설도 있다[11].

3. 용서의 방식

용서는 상속결격의 효과를 소멸하게 한다고 하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하는 경우와 단순한 감정의 표시인 경우가 있다[12]. 따라서 감정의 표시인 경우에는 상속결격자의 과오를 용서하고 상속결격자를 상속인으로 대우하는 생활사실을 회복하는 적극적인 의도가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4. 입증책임

용서가 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용서로 인하여 이익을 보는 상속인이 용서가 있음을 제시하여야 한다. 입증에 대한 사실은 법원의 직권사항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바로 법원이 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 감정에도 맞을 것 같다.

5. 학 설

1.1 긍정설

상속결격은 상속인과 피상속인간의 상속적 협동관계의 파괴를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적 회복관계의 회복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결격을 용서하여 결격의 효과를 소멸시킬 수 있다고 한다.

1.2 부정설

상속결격제도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연히 발생하고, 피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제도라는 점 등을 이유로 피상속인이 임의로 결격자를 용서하여 상속자격을 회복시킬 수 없다고 하는 설이다.

1.3 절충설

피상속인이 상속인의 비행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유효하게 생전 증여나 유증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증여나 유증에는 결격의 효과가 미치지 아니한다. 이로써 실질적으로 용서는 가능하다. 따라서 생전증여의 경우에 한하여 상속결격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 외에는 용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13].

6. 소 결

상속결격에 대해서는 용서규정을 두지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용서를 인정할 수 없지만, 우리민법에 용서규정을 두어 피상속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입법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V. 결 론

지금까지 살펴본 상속결격제도는 법률상 상속결격사유만을 인정하고 있을 뿐 그에 따른 구체적 요건과 효과는 대부분 일반적인 해석론으로 해결을 하고 있다. 민법 제1004조 제1호,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있어서 비행의 피해자에는 피상속인만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상속의 선순위 및 동순위자도 포함하고 있는데 비행행위의 피해자가 피상속인 경우에만 상속적 협동관계 파괴를 근거로 하여 상속권을 상실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비행행위의 경우 가해자에게 위법이득의사가 존재하는 경우에 상속결격자로 판단하는 것이 보다 옳을 것 같다.

그리고 상속결격의 효과에 있어서는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상속인은 당연히 상속할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결격사유의 경우 비행의 정도가 서로 차이가 많이 있어 이 부분도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모색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상속결격자에 대한 용서부분에서는 상속결격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더라도 피상속인이 비행행위자가 추정상속인이 되기를 바란다면 용서는 막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됨으로 용서제도 도입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며, 전체적으로 상속결격사유에 대해 시대변화에 따라 새로운 개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References

- [1] Park Jong-Ryeol, "The Inheritance Act of Domestic relations", Jiseonggye, 2011, p.285
- [2] Kim Ju-Su · Kim, Sang-Yong, "The Inheritance Act of Domestic relations" Beopmunsu, 2006, p.557
- [3] Yoon, Jae-su, "Thought about the inheritance system", Graduate school of Dong-ah University. Theses for Master's degree of Laws, 1987, p.61
- [4] Hwang Gyeon-Gung, "The problem of all sorts about Korean Family Law Association", Association on Family Law in Korea. Vol.20 No.2, 2008, p.108
- [5] Oh Byeong-Cheol, "Some matters about Disqualification of Heir", Association on Family Law in Korea. The study on Family Law Vol.23, No.3, 2010, p.202
- [6] Back Seong-Gi, "The Domestic relation law of succession", Jinwonsa, 2010, p.304
- [7] Kwan Sun-Han, "The Domestic Relation Law of succession", Fiders, 2010, p.360
- [8] Kim Yu-Eun, "A Study on the Disqualification of Heir", The graduate school of Sungkyunkwan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2010, p.142

- [9] Jeong Gwang-Hyeon, "A study on Korean Family Law", A Publishing department of Seoul university, 1965, p.332
- [10] Jeong Beom-Seok, "Serveral Issues on the Disqualification of Heir",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 Law Judicial Administration, Vol.12, No.8, 1971 p.21
- [11] Shin Yeong-Ho, "Lecture on Family Law", Sejong Publisging Company, 2010, p.324
- [12] Park Dong-Seop, "The Domestic Relation Law of Succession", Parkyeongsa, 2009, p.489
- [13] Kwak Yun-Jik, "The Domestic Relation Law of Succession", Parkyeongsa, 2004, p.45